

구미시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한정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7. 6.

발 의 자 : 한정우·김도문·김영호
김익수·박순이·장세만
(6인)

1. 제안 이유

「도시공원법」을 토대로 「구미시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조례」가 제정되었으나 「도시공원법」이 폐지되고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보완·정비 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- 「도시공원법」을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
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6조)
- 「도시계획법」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
(안 제3조, 제4조)

3. 참고 사항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구미시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명 “구미시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”를 “구미시 도시
공원·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도시공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 및 제12조의2
도시공원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 및 제7조”를
“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 및
제38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
한다) 제22조, 제23조, 제43조 및 제44조”로 하고, “법 제30조의
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”을
삭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법 제8조”를 “법 제24조”로 하고, 동조동항제2호
및 동조동항제3호중 “도시계획법 제14조의2”를 각각 “「국토의
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중 “법 제8조 제2항”을 “법 제24조 제2항”으로 하고,
동조동항 제1호 중 “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2”를 “영 제22조 제8호”로,
동조동항 제2호 중 “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3”을 “영 제22조 제9호”로,
동조동항 제3호 중 “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4”를 “영 제22조 제10호”로
한다.

제3조 제3항 제4호 중 “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3항”을 “지적법
시행령 제6조 제2항”으로 한다

제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제4호”를 “제3호”로, “법 제4조”를 “법
제16조”로 하고, 동조 동항 제3호 중 “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”를
“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”
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“법 제12조의2”를 “법 제38조”로, 동조 동항
제2호 및 제3호 중 “도시계획법 제14조의2”를 각각 “「국토의
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”로 하고, 동조 동항 제4호 중
“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”를 “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
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”로 한다

제4조 제2항 중 “법 제12조의2의”를 “법 제38조”로 하고, 동조 동항
제2호 다목 중 “10미터 이하로 하되,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
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(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
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)”를 “8미터 이하로 하되, 그 이상이
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(「국토의 계획
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도법」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)”
로 하며, 동조 동항 동호 바목 및 자목 중 “영 제6조 제1항 제3호”를 “영
제22조 제3호”로 하고, 동조 동항 제3호 중 “제15조 제4항 제3호”를
“제15조 제5항 제3호”로 한다.

제5조중 “5일” 을 “30일” 로 하고, “기간만료 10일전까지 민원인에게 기간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” 를 “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” 로 한다.

제6조중 “법 제9조 및 제12조의2” 를 “법 제25조 및 제38조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명 구미시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조례	제명 구미시 도시공원·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	제명 뛰어 쓰기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 및 제12조2, 도시공원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 및 제38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22조, 제23조, 제43조 및 제44조----- <삭제> ----- -----	법률 명칭 및 법조문의 변경
제3조(공원점용허가)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.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. (생략)	제3조(공원점용허가) ①법 제24조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----- ----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-----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	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②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. 1.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내에서 농업. 임업.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.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3.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4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③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. 1.~ 3.(생략) 4.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.	②법 제24조 제2항 ----- ----- ----- ----- 1. 영 제22조 제8호 ----- ----- ----- ----- 2. 영 제22조 제9호 ----- ----- 3. 영 제22조 제10호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 1.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지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----- ----- ----- -----	법률 명칭 및 법조문의 변경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 1. 제1항 제1호 내지 <u>제4호</u>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는 <u>법 제4조</u>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. 제1항 제2호 내지 <u>제4호</u>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는 <u>법 제4조</u>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. <u>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	④ (현행과 같음) 1. -----<u>제3호</u>----- ----- <u>법 제16조</u> ----- ----- ----- 2. -----<u>제3호</u>----- ----- <u>법 제16조</u> ----- ----- ----- 3. 「<u>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</u>」 <u>제3조</u> ----- ----	법률 명칭 및 법조문의 변경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4조(녹지점용허가)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.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.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 ②시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2. (생략) 가. 나. (생략)	제4조(녹지점용허가) ① 법 제38조 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----- ----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5조----- ----- ----- ----- 4.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.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3조 ----- ----- ----- ----- ②----- 법 제38조 ----- 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가. 나. (현행과 같음)	법률 명칭 및 법조문의 변경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다.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0미터이하로 하되,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(도시계획법 및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)로 점용허가 할 것 라. 마.(생략) 바.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사. 아.(생략) 자.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접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. 3.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된 원인시설(도로, 철도 등)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	다. ----- 8미터이하로 하되,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사도법」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)----- 라. 마.(현행과 같음) 바. ----- ----- 영 제22조 제3호 ----- ----- 사. 아.(현행과 같음) 자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영 제22조 제3호 ----- ----- 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15조 제5항 제3호 ----- -----	법률 명칭 및 법조문의 변경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③ (생략) 제5조(점용허가의 기간)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여부 등에 따라 정하며, 허가를 받은자가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5일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기간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제6조(점용시설의 철거등)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	③ (현행과 같음) 제5조(점용허가의 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30일 ----- -----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제6조(점용시설의 철거등) ----- 법 제25조 및 제38조 ----- ----- ----- -----	법률 명칭 및 법조문의 변경

구미시도시공원·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명

[illegible]